

제205회 영등포구의회  
2017년도 제2차 정례회

『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- 생활환경국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7. 12. 05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# 『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- 생활환경국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306호 및 제307호로 2017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

나.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

다. 상위법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## 4. 참고사항

### 가. 관련근거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- 「지방회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
## 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2017.12.31.자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통합관리기금의 폐지 및 상위법 개정애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.

### ○ 주요 개정내용은

1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,

- 안 제2조의2제3항에서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변경과 관련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비율을 “10분의 5이하” 를 “10분의 2이하” 로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였으며,
- 안 제2조의3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

존속기한을 “2017년 12월 31일” 에서 “2022년 12월 31일” 로 연장하였고,

- 안 제3조제4항은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” 이 폐지됨에 따라 그와 관련하여 조항을 삭제하였으며,
- 안 제3조의2제4항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“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” 를 “2년으로 한다” 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정비하였음.

## 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안 제2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“2017년 12월 31일” 에서 “2022년 12월 31일” 로 연장하였고
- 안 제4조의2제4항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“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” 를 “2년으로 한다” 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정비하였으며,
- 안 제8조제3항에서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과 관련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비율을 “10분의 5이하” 를 “10분의 2이하” 로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였음.

- 본 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상위법 개정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 관 련 법 령

### ■ 『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』

**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**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5.7.24.>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7.24.>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15.7.24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7.24.>

**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5.7.24.>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7.24.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## ■ 『지방회계법』

**제49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)**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